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58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원이 · 오세희 · 서삼석
위성곤 · 김한규 · 서영교
이해식 · 김남근 · 서영석
이재관 · 한준호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에 대해 운송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세관장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61조제4호 중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제2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0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0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제70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제2
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를 “제3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에는 제60조제2호의2 및 제61조제4호·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 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 · 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 · 소비한 자</u>	<u><삭 제></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 ----- -----. ----- -----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u>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u> 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4. ----- <u>제213조제2항</u> ----- ----- ----- -----
5. 삭 제	
6. <u>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u>	<u><삭 제></u>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7. (생략)

제70조(과태료)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7.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한 자

3. (현행과 같음)

4.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 제5항까지의 -----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u>제2 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u> 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 다)이 부과·징수한다.	----- -----<u>제3</u> <u>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u>- ----- -----.
---	---